



보호(Safeguarding)와 관련된 우려에 대한 대응 실무 안내서

저희 브로큰베이 교구는 안전한 지역 사회를 위한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방편으로 교구는 학대를 경험한 사람, 미성년자(18 세 미만)에 대한 우려를 가진 사람, 위험에 처한 성인, 또는 교구 내 위험에 처한 아동/성인을 돌보는 사람의 행위나 행동에 대해 우려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도록 격려합니다.

자신의 학대 사실을 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숨겨왔던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여러 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에, 학대 피해자로부터 믿고 이야기하기로 선택된 사람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존중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판단없이 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학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이메일 또는 기타 다른 방법들을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대받은 경험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학대의 기억을 억눌러왔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초로 공개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시범적으로 연락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그 첫 번째 공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없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성직자에게 고백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NSW 주에서는 고해성사에서 고백한 내용은 경찰 신고 의무에서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해성사가 아닌 환경에서 고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직자는 고백 내용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학대 신고를 받는 교회 직원은 NSW 경찰과 지역사회 및 법무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에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접하게 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학대
- 과거 학대 경험 — 수 년 전 경험일 수도 있음
-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들
- 실제 목격한 사건들
- 가해자가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음



각 상황에서 이행해야 하는 대응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상담의 가장 좋은 환경은 방해가 적은 조용한 환경입니다. 가능한 내담자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시간에 다시 오라고 제안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모범 관행	피할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착하세요. ● 말을 끊지 말고 주의 깊게 들으세요. ● 해당 아동/성인의 복지 및 안전을 먼저 확보하세요. ● 상세하게 기록하고 제공된 모든 정보를 문서화하세요(공개 후 가능한 신속하게). ● 공개하게 된 용기를 칭찬하고 옳은 일인 것임을 인식시키고 안심시켜 주세요. ● 추후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 교구의 불만 처리 정책을 따르세요. ● 직속 상관, 본당 주임 신부나 교장 또는 CCD 교리 교사인 경우는 교구 CCD 코디네이터에게 보고하세요. ●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Safeguarding 사무실에 지원을 요청하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황, 충격, 분노 또는 불신의 감정 표출 ● 요점만 말하도록 질문 하기 ● 공개하는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돌려 보낸다거나, 과장된 이야기라고 축소시키거나, 이의 제기, 충고 또는 판단을 말한다. ●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다(공개한 내용을 절대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됨). ●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접수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직속 상관이나 당국의 지시가 없는 가운데 직원, 부모, 다른 아동과 들은 내용에 대해 상의한다. ● 들은 내용들에 대해 판단한다.

상담 후 취해야 할 대응 지침

- i. 정보 공개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000 번으로 구조요청을 하십시오.
- ii. 들은 내용을 기록해서 문서화하십시오.
 - 공개한 사람/피해자의 이름 및 연락처 세부 정보
 - 가해자 이름
 - 범죄의 본질(간단히)
 - 혐의 사건이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 정보를 제공받은 날짜와 시간, 문서 작성자 성명 기록
- iii. 즉시 본당 주임 신부, CCD 코디네이터 또는 보호 관리자(Manager for Safeguarding (Chancery & 사목구) (Safeguarding Office))에게 보고하십시오.
- iv. 정보 공개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 고려해 주십시오.
- v. 신고의 의무를 고려하십시오(NSW 경찰이나 지역사회 및 법무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음).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Safeguarding Office 와 상의하십시오. **신고의무자인 경우 신고 의무 순서표(Mandatory Reporting flowchart)를 참조하십시오.**



- vi. 본인의 감정 상태를 살피십시오. 격한 감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Safeguarding Office**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B. 특정 아동의 안전, 복지, 안녕에 우려가 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아동(또는 미출생 태아)의 건강에 대한 모든 우려는 진지하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대 사실과 관련없이 아동의 복지에 대한 모든 우려가 해당됩니다.

아이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00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본당 주임 신부, 사역 코디네이터, 직속 감독관/관리자, CCD(CCD 교리교사인 경우) 또는 **Safeguarding Office**에도 우려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귀하가 신고의무자인 경우는 지역사회 및 법무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에도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은 ‘심각한 피해의 위험 신고 의무 안내 자료(**Risk of Significant Harm Mandatory Reporting Fact Sheet**)’ 참조).

C. 다른 교구 근로자가 아동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된 경우

특정 성인이 아동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는 즉시 본당 주임 신부, 담당 코디네이터, 직속 감독자/관리자, CCD(CCD 교리교사인 경우) 또는 Safeguarding Office에 알려야 합니다.

사목구 및 Chancery 지도자는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계약자의 행동을 감독하고 우려 행동을 보고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은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대응 안내 자료(**Responding to Reportable Conduct Fact Sheet**)’ 참조).

D. 성적 학대와 같은 심각한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Crimes Act 1900 (NSW 형법)에 따라 NSW 주의 모든 성인은 미성년자(18 세 미만)가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믿거나, 합리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NSW 경찰에 신고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은 ‘NSW 경찰 범죄 신고 안내 자료(**Reporting Crimes to NSW Police Fact Sheet**)’ 참조).

모든 경우에 있어 기억하세요! 사건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닙니다.



학대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귀하에게 없다는 점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책임은 Safeguarding Office 에 현 문제(학대/범죄 혐의)를 보고하여 귀하 및/또는 Safeguarding Office 에 지어진 신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목회적 보살핌 등 추후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보 공개자와 관련한 귀하의 주된 역할은 목회적 보살핌을 제공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 경청하는 것입니다.



Office for
Safeguarding
(CHANCERY)

CATHOLIC
DIOCESE OF
BROKEN BAY

아동과 청소년을 대할 때는 3R 대응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동/성인을 안심(Reassure)시키고, 정보를 기록(Record)하고, 사건을 신고(Report)하십시오.

아동이나 성인이 학대/방치 사실에 대해 공개합니까?

아동 또는 성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가 우려되십니까?

직원/자원봉사자/성직자의 아동이나 성인에 대한 우려 행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까?

아동 학대와 관련된 심각한 범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동 또는 성인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요

네, 즉시 000번으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본당 주임 신부, 직속 감독관 또는 CCD(CCD 교리교사인 경우) 및 Safeguarding Office에 즉시 연락하여 업데이트하십시오.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는데 DCJ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신고 의무 안내서(MRG)를 작성하고 지침을 따르십시오. Safeguarding Office, CCD(CCD 교리교사인 경우) 또는 직속 상사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경찰에 이미 연락했고, 본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는 아동 보호 헬프라인 132 111번으로 신고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세부 사항을 기록하십시오. Safeguarding Officer가 필요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비밀을 유지하고 본당 주임 신부, 감독관 및 Safeguarding Office와만 논의하십시오.

Safeguarding Office 이메일 safeguarding@bbcatholic.org.au 또는 전화 02 8379 1605



참고 문헌

교구 인트라넷을 통해 아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책 - 불만 처리 프레임워크(Complaints Handling Framework)

정책 및 안내 자료 - 심각한 피해 위험 - 신고 의무(Risk of Significant Harm - Mandatory Reporting(순서도 첨부))

실무 안내서 - 브로큰베이 교구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에 관한 법률(Legislation that affects those that work with children in Broken Bay)

실무 안내서 - 학대 징후 및 피해 위험에 처한 아동(Signs of Abuse & Children at Risk of Harm)

실무 안내서 - 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 에 신고해야 하는 행위(What conduct must be reported to the 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

안내 자료 -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대응(Responding to Reportable Conduct)

안내 자료 - NSW 경찰 범죄 신고(Reporting Crimes to NSW Police)

포스터 - 아동,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의 학대/방치 사실에 대한 대응(Responding to a child, young person or vulnerable adult disclosing abuse or neglect)

추가 정보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정보 공개에 대응하고 보호 문제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Safeguarding Office (Chancery) 이메일 safeguarding@bbcatholic.org.au 또는 전화 **02 8379 1605** 로 문의하세요.

개정/수정 이력

날짜	버전	현재 제목	변경 사항 요약	승인 날짜	사용 시작 날짜
14/08/2020	2.	보호 우려 사항 대응에 대한 실무 안내서	제목 변경 및 순서도 삽입.	2020년 11월	2020년 11월
29/06/2020	1.	아동,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의 학대 또는 방치 사실 공개에 대한 대응 실무 안내서	신규	2020년 6월	2020년 6월
13/03/2023	3	보호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 및 순서도에 성인 추가,		



			피할 관행란 수정, '청소년'을 삭제하고 18 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정의함.		
--	--	--	--	--	--

승인 날짜/개정 일정

승인자: Ana Kosi, 보호(Safeguarding) 담당 매니저

승인 날짜: 2024 년 3 월 13 일

검토 예정일: 2026 년 3 월 13 일